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38회 임시회(2020. 5. 20.)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의회운영위원회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-35 |
|----------|-------|

2020. 5. 20.  
전문위원 신준호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강명숙 의원 외 6 인
- 나. 제 안 일 : 2020. 5. 13.
- 다. 회 부 일 : 2020. 5. 13.

### 2. 제안이유

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수 체험 수기 제출 등의 후속조치 관련 사항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직접 참여와 실효성을 제고시켜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 우수체험수기 제출 규정과 활동 결과의 우수성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9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기타 : 입법예고 : 2020. 5. 13.~ 5. 17.(의견 없음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개정 배경

-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 환류(feed-back) 차원의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.

### 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안 제9조는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후속조치 차원의 방안으로 의회체험 활동 수기 공모 제출과 그 활동이 우수한 학교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차원의 방안으로 검토됨.

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의 대의민주주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제안된 사항임.

| 구 분  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비고 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실시 횟수 | 2회    | 1회    | 1회    |     |
| 참여 학교 | 2개교   | 1개교   | 5개교   |     |
| 참여 학생 | 65명   | 23명   | 27명   |     |
| 지출 예산 | 312천원 | -     | 94천원  | 간식비 |

<표.1 마포구의회 모의의회 실시현황>

안 제9조의 조항 신설로 그 동안 활동 자체에만 국한하여 시행하였던 의회체험을 체험수기의 제출 및 그에 대한 표창으로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하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(단위 : 천원)

| 예산과목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예산액 |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편성목          | 통계목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36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업 무<br>추 진 비 | 시 책 추 진<br>업무추진비 | 360 | ▶ 어린이·청소년 모의의회 360천원<br>- 음료 및 다과비 2,000원 × 180명(6개교) |

<표.2 2020년 마포구의회 의회체험 관련 예산액>

# [관 계 법 령]

##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
### 제5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

-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활동 프로그램,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